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47호 2017. 5. 16(화)

# 포항시보

## ◀ 입법예고 ▶

-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제2017 - 53호) ..... 2

## ◀ 고 시 ▶

- 재난위험시설(교량)의 해제 고시(제2017 - 60호) ..... 9
- 죽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7 - 62호) ..... 10

## ◀ 기 타 ▶

- 2017년 4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공표 ..... 12

회								
람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7 - 53 호

**공 고**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조례명**

-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 법인격, 정관, 사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임원, 이사회, 직원, 운영재원, 직원(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 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지도·감독(안 제14조, 제15조)

#### 4. 관련 법령

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5. 조례안 : 붙임

#### 6. 예고기간 : 2017. 5. 12. ~ 2017. 6. 2.(21일간)

#### 7.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6.2.(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문의 및 의견제출 : 포항시 주민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7683)

전화 054)270-3054, FAX 054)270-2920, E-mail welfare777@korea.kr

####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4.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③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이사회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고 시
-----

포항시 고시 제2017-60호

## 재난위험시설(교량)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포항시장

○ 재난위험시설 해제

대상시설(지역)			해제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지역명)	소재지	소유자(관리 자·점유자)				
대련교	포항시 북구 홍해읍 대련리	포항시장 (건설과)	교량 재가설에 따른 철거	E	-	

포항시 고시 제2017- 62 호

## 죽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온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승인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474번지 일원의 죽천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 일

포 항 시 장

### 1. 온천공보호구역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 가. 명 칭 : 죽천 온천공보호구역
-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474번지 일원
- 다. 면 적 : A=5,257㎡

###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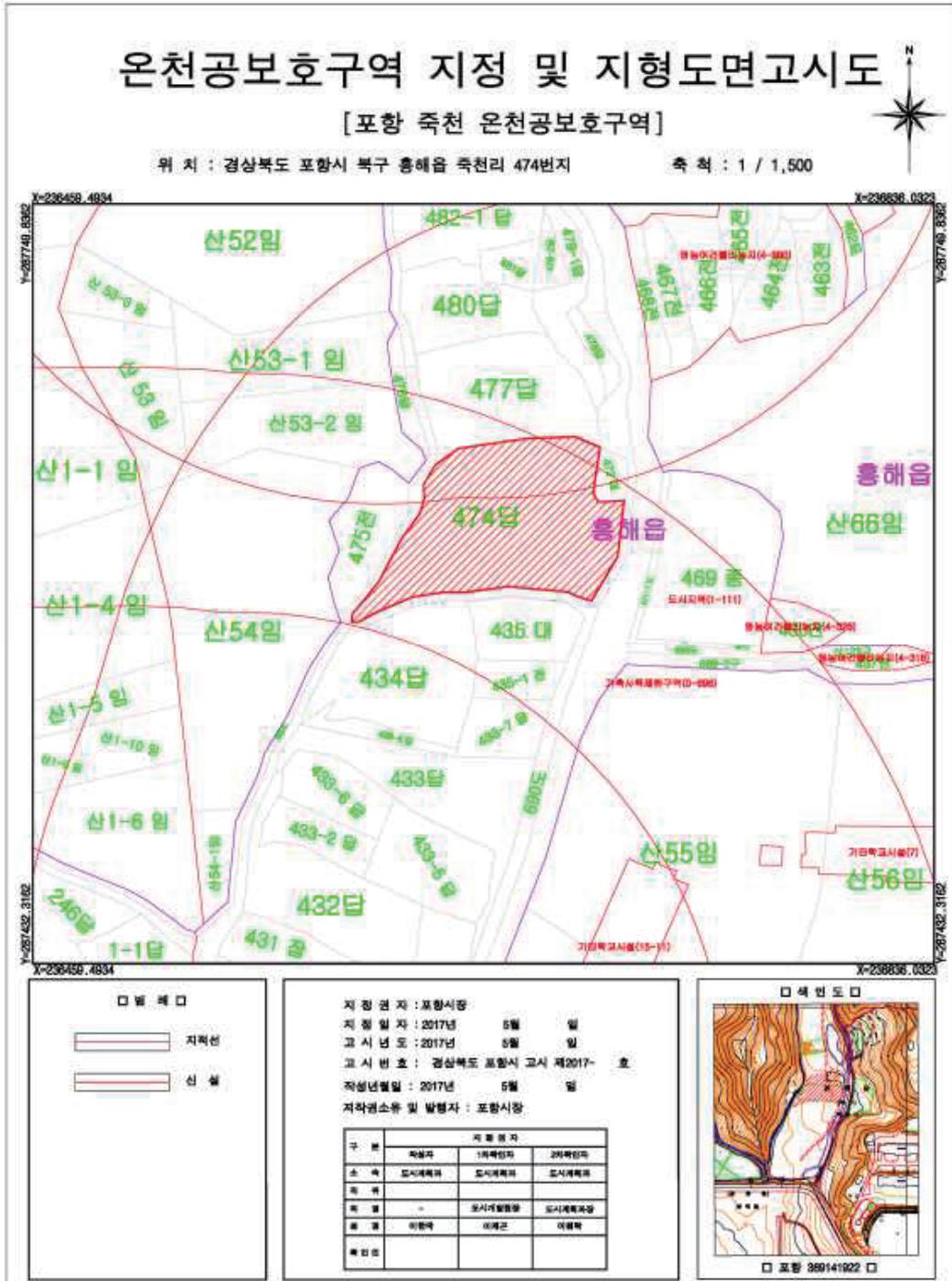
- 가.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 도모
-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3. 온천공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 4.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50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기 타

함께하는 연화  
도약하는 포항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Creative Pohang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

2017년 4월

pohang | 맑은물사업본부  
포항시 | 정수관

##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요약 ]

- 공 표 일 : 2017년 5월 10일
- 검 사 일 : 2017년 4월 중
- 검사기관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 검사대상
  - 포항시상수도사업본부
    - 원 수 (하천수 및 호소수) : 10개소
    - 정 수 : 유강정수장 등 8개소
    - 노후지역 수도꼭지 : 8개소

### □ 검사항목

- 원 수 : 환경기준(하천수, 호소수) 6개 항목
- 정 수 : 먹는물수질기준 52개 항목
- 노후수도관 : 먹는물수질기준 10개 항목

### □ 검사결과

- 정 수, 노후지역 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 원 수 :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기준(BOD/COD기준)이며, 착수정 수질로 등급 산정

구 분 (상수원)	유 강	공 단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양 덕	약 성	비 고
	안계댐수		형산강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	진전지수	눌태지수	영천댐수	곡강천 복류수	
등 급									

▷ 원수 등급 선정 기준 (환경부)

매우좋음	좋 음	약간좋음	보 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Ia	Ib	II	III	IV	V	VI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7년 4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 5. 10.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4월중		검사기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먹는물수질검사팀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갈평	공단	병포	약성	양덕	유강	제2수원지	택전	학야
		기준	결과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3	납(Pb)	0.01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4	불소(F)	1.5mg/l이하	0.07	0.1	0.09	0.16	0.12	0.11	0.12	0.22	0.22	-
5	비소(As)	0.01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6	세레늄	0.01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7	수은	0.001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8	시안	0.01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9	6가크롬(크롬)	0.05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10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11	질산성질소	10mg/l이하	0.4	1.0	0.8	1.3	1.3	0.9	1.1	1.8	1.8	-
12	카드뮴	0.005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13	페놀	0.005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14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32	0.037	0.05	0.023	0.043	0.04	0.042	0.033	0.033	-
15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16	파라티온	0.06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17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18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19	카바릴	0.07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0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1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2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3	디 클로로메탄	0.02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4	벤젠	0.01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5	톨루엔	0.7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6	에틸벤젠	0.3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7	크실렌	0.5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8	1,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9	사염화탄소	0.002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30	경도	300mg/l이하	35	56	51	91	86	58	69	132	132	-
3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이하	3.2	5.6	4.9	4.9	6.2	5.8	4.9	4.7	4.7	-
32	냄새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33	맛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34	동	1mg/l이하	0.0	0.0	0.0	0.02	0.0	0.0	0.0	0.0	0.0	-
35	색도	5mg/l이하	1	2	1	2	2	2	2	2	2	-
36	세제	0.5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37	수소이온농도(pH)	5.8- 8.5	7.3	7.5	7.2	7.5	7.5	7.4	7.5	7.6	7.6	-
38	아연	3mg/l이하	0.011	0.003	0.002	0.153	0.0	0.003	0.005	0.004	0.004	-
39	염소이온	250mg/l이하	12.6	11.9	17.7	14.6	14.1	11.8	19.6	57.7	57.7	-
40	중발산유물	500mg/l이하	116	101	124	121	136	158	143	157	157	-
41	철	0.3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42	망간	0.05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43	탁도	0.5NTU	0.10	0.14	0.15	0.16	0.12	0.10	0.11	0.16	0.16	-
44	황산이온	200mg/l이하	14	14	17	30	17	14	24	75	75	-
45	알루미늄	0.2mg/l이하	0.0	0.0	0.0	0.04	0.03	0.0	0.0	0.0	0.0	-
46	유리잔류염소	4mg/l이하	0.66	0.51	0.6	0.2	0.53	0.49	0.4	0.34	0.34	-
47	붕소	1mg/l이하	0.0	0.02	0.02	0.04	0.02	0.02	0.02	0.08	0.08	-
48	클로로포름	0.08mg/l이하	0.025	0.033	0.038	0.018	0.039	0.035	0.027	0.001	0.001	-
49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50	클로랄라이드레이트	0.03mg/l이하	-	-	-	-	-	-	-	-	-	-
51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	-	-	-	-	-	-	-	-	-
52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	-	-	-	-	-	-	-	-	-
53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	-	-	-	-	-	-	-	-	-
54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	-	-	-	-	-	-	-	-	-
55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mg/l이하	0.007	0.004	0.01	0.005	0.004	0.005	0.012	0.006	0.006	-
56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mg/l이하	0.0	0.0	0.002	0.0	0.0	0.0	0.003	0.014	0.014	-
57	1,4-다이옥산	0.05mg/l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58	포름알데히드	0.5mg/l이하	-	-	-	-	-	-	-	-	-	-
59	브롬산염	0.01mg/l이하	-	-	-	-	-	0	0	0	0	-
판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사항목	기준	경수장 급수지역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양학로 17번길 4	대송면 제내길 21	상호로 473번길 8-1	중양로 36-1	택전리 220-1	오전읍 철강로 734-3	구룡포읍 병포길 1-1	신흥로 861번길 17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동(Cu)	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6
5.아연	3mg/l이하	0.023	0.004	0.013	0.016	0.009	0.008	0.006	0.097
6.염소이온	250mg/l이하	15.5	11.9	14.1	15.2	57.6	12.6	17.8	14.5
7.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망간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0.63	0.55	0.67	0.56	0.29	0.69	0.80	0.39
10.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관내 일반 수도꼭지 87개소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밤리콜 270-8282**, 학야경수장 230-4791

-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수돗물에서 소독 및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이유

식당 등에서 끓인 보리차나 음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스사용으로 인한 냄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VC 호스의 경우, 페놀 및 2,4-디클로로페놀(91년 발생한 페놀사태의 원인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으며, 특히 클로로페놀류는 강한 소독 냄새와 유사한 냄새를 유발시키며 가열을 해도 일반 소독용 염소와 달리 휘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에서 강한 소독냄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무취 식수 수도용 호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